

의안 번호	제3704호
----------	--------

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0월 10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0월 2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.
- 이에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(자원화센터) 처리량을 제외한 잔여량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27. 12. 31.
- 나. 수탁자 :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수거지역과 거리 및 운반비용, 적정 자원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
- 다. 위탁방법 : 일반(총액)입찰
- 라. 위탁사무 :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종량제기기로 배출되어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대행업체를 통하여 수거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행정의 유연성과 위탁업체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
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함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수정안 1부

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370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10. 21.
제출자 도시환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, 기간 내 사업 성과 및 업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임. 이에 행정의 유연성과 위탁업체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 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“2026. 1. 1. ~ 2027. 12. 31.” 을
“2026. 1. 1. ~ 2026. 12. 31.” 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함.

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

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위탁기간 : “2026. 1. 1. ~ 2027. 12. 31.”을 “2026. 1. 1. ~ 2026. 12. 31.”로 한다.

동의안·수정안 비교표

동 의 안	수 정 안
2. 주요내용 가. 위탁기간: 2026. 1. 1 ~ 2027. 12. 31	2. 주요내용 가. 위탁기간: 2026. 1. 1 ~ 2026. 12. 31